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경 찰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,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에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(안 제18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)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

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
2.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
3.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4.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
5.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)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</u> <u>2.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</u> <u>3.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</u> <u>4.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</u> <u>5.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</u>

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
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
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하는
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2831